

현실 시공·관리 위해 시공관리연구비 책정

1·3종 어항 기본시설 31, 유키보강 28개항

조기완공 목표로 1,284억원 투입

.....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개발하는
 제1·3종어항에 1,284억원을 투자하여
 31개항의 기본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
 3개항을 완공시킬 계획이다.

정 진 혁 / 해양수산부 어항개발과 사무관

어항의 종류 및 기능

어항이란 일반적으로 어선이 출입·정박하여 어획물을 양륙하고 출어에 필요한 자재의 공급 및 기상악화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지원기지를 말하며 어항법상으로는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어항지정현황

시·도별	계	제1종어항	제2종어항	제3종어항
계	415개항	58	326	31
부산 시	16	2	14	-
인천 시	37	-	33	4
울산 시	6	2	4	-
경기 도	7	-	7	-
강원 도	28	12	16	-
충남 도	36	4	31	1
전북 도	18	1	13	4
전남 도	129	11	104	14
경북 도	38	12	24	2
경남 도	80	10	66	4
제주 도	20	4	14	2

이러한 어항은 제1종어항, 제2종어항 및 제3종어항 등 3 가지 종류의 어항이 있으며 제1종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으로 주요연안에 위치하여 그 지방어선을 포함한 외지어선의 어업지원기지 역할을 하는 어항이며, 제2종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으로 제1종어항보다 규모가 적으며 주로 그 지방어선이 이용하는 어항이다. 또한 제3종어항은 도서, 벽지에 소재하여 연근해 어장의 개발과 기상악화시 어선이 긴급대피할 수 있는 어항으로 이용범위는 전국적이다.

이 중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제1종어항과 제3종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으며,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제2종어항은 시·도지사가 국가에서 시설비의 50%를 지원 받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어항은 제1종어항이 58개항, 제2종어항이 326개항, 제3종어항이 31개항으로 전국적으로 총 415 개항이 지정,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어항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어선의 입·출항 및 안전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그리고 출어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유류, 얼음 등 보

급품을 지원하는 어업활동의 지원기지로서의 기능이며, 이는 어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업활동은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업종별로 연중 계속되는 산업으로 기상악화시 조업중인 어선들이 어항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산지 수산물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어장에서 생산된 각종 어획물은 대부분 어항을 통하여 양륙되므로 1차적인 수산물의 집하 및 가격이 결정되어 소비지의 도매시장, 수산물가공공장 및 기타 구매처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산지 수산물 유통센타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어항은 어촌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생활근거지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어항을 중심으로 수산물시장 형성 등 어촌지역의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간 또는 도서와 육지간의 교통, 관광과 정보교환 등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경제권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촌지역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생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어항은 결과적으로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며,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항을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그리고 어촌지역의 교통 및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종합기능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등 1차적인 기능중심은 물론 어항내에 수산물시장, 직매장, 위판장시설 확대로 수산물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시설, 복지회관, 전시관등 문화·복지시설 및 레저시설, 특산품판매장, 횟집, 숙박시설 등 관광·휴게시설도 적극 개발하여 어촌지역 발전의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관련 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를 어항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어항법을 개정하여 어항개발 주체를 다양화 해 나갈 방침이다.

어항개발 실적

어항개발 실적은 '97년말 현재 총 415개 어항 중 109개

어항개발 실적

(단위 : 개항, '97년말 현재)

구 분	지정항수	완공항수	개발률(%)	비 고
계	415	109	26	
제1·3종어항	89	57	64	
제2종어항	326	52	16	

총투자 실적

(단위 : 억원, '97년말 현재)

구 분	총 계획	'97 까지	잔여사업비	투자율(%)
계	28,329	12,283	16,046	43
제1·3종어항	14,784	9,076	5,708	61
제2종어항	13,545	3,207	10,338	24

어항이 완공되어 2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해양수산부가 개발하는 제1·3종어항은 총 89개항 중 57개항이 완공되었으며, 시·도지사가 개발하는 제2종어항은 총 326개소 중 52개항의 기본시설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어항개발에 관한 예산 투자실적을 보면 415개항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총 2조 8천 329억 원이며, '97년말 현재 투자한 금액은 1조2천283억원으로 지금까지 총사업비의 43%가 투자되었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1조 6천 46억원이며 이 중 제1·3종어항에 5천708억원, 제2종어항에 1조 338억원이다.

'98어항개발 계획

'98년도의 어항개발 예산은 1천 44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개발하는 제1·3종어항에 1천 284억원을 투자하여 31개항의 기본시설 사업을 계속 추진, 3개항을 완공시킬 계획이며, 시·도지사가 개발하는 제2종어항 시설비에 1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 574억원은 모두 제1·3종어항개발 사업비로 12개 어항의 기본시설 사업과 기본시설이 완공된 어항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28개 어항의 시설비에 565억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또한 어항공사의 견실한 시공 및 관리를 위하여 시공관리 연구비 1억3천 500만원을 책정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기본조사 설계를 위한 수치모형실험 등 연구용역비도 별도로 4억5천만원을 책정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92이전에 착공된 제1·3종 어항과 제2종 어항의 기본시설을 조기완공하기 위하여 매년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제1·3종어항 기본시설비 702억원(19개항)과 제2종어항 시설비의 50%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비 164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한편 제1·3종어항의 공사를 초기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태·폭풍기(7~8월)이전에 주요공종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설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견실 시공 및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 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2종 어항개발비 지원에 대하여서는 시·도의 적극적인 개발의욕 고취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별 개발계획, 투자실적, 순수지방비 확보 실적 등을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제2종어항의 개발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공

기획특집 ————— '98 어항어촌 및 연안항 개발 / 어항 개발

사진도 및 시공현황 등을 부단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9.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항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어항의 개발 및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관련 공공단체 등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하고,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수입금을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토록 하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함께 어항법시행규칙중 어항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종합기능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어항개발 수요증가에 따른 지정어항의 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98년도 어항개발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分		'98예산액	비 고
어 항 종류별	○ 제1·3종어항	128,409	
	- 시설비	126,650	○ 기본시설(31개항)
	- 부대경비	1,759	○ 유지보강(28개항)
	○ 제2종어항	16,350	○ 기본시설(46개항)
합 계		144,759	
예 산 회계별	〈일반회계〉	57,440	
	○ 제1·3종어항	57,440	
	- 시설비	56,499	○ 기본시설(12개항), 유지보강(28항)
	- 부대경비	941	
	〈농특회계〉	87,319	
	○ 제1·3종어항	70,969	
	- 시설비	70,151	○ 기본시설(19개항)
	- 부대경비	818	
○ 제2종어항		16,350	○ 기본시설(46개항)

제2종어항 시·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2,700	2,380	1,780	720	3,100	2,860	2,200	7,900	2,560	6,240	2,960
국비 (50%)	16,350	1,190	890	360	1,550	1,430	1,100	3,950	1,280	3,120	1,480
지방비 (50%)	16,350	1,190	890	360	1,550	1,430	1,100	3,950	1,280	3,120	1,480
투자항	46	3	3	1	4	4	3	11	4	9	4